

# 울 산 지 방 법 원

## 판 결

사 건 2014가단1071 공작물 철거 등  
원 고 A  
피 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표자 군수 신장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린 담당변호사 장문수  
변 론 종 결 2014. 11. 26.  
판 결 선 고 2015. 1. 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웅촌면 은현리 대 75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ㄴ' 부분 토지 54㎡에 설치한 상·하수도 시설을 철거하고, 위 'ㄴ'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

## 이 유

### 1. 인정 사실

가. 울산 울주군 웅촌면 은현리 B 마을 주민은 국가 소유의 울산 울주군 웅촌면 은현리 도로 6,741㎡(이하 기존 도로라고 한다)를 마을 안길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폭이 2m에 불과하여 통행에 불편이 있었다.

나. B 마을 주민은 1960년 후반부터 1970년 초반 사이에 새마을 사업으로 기존 도로의 폭을 현재와 같이 4m로 확장하였는데, 그 당시 기존 도로 인근 토지의 소유자들은 자발적으로 이에 참여하였고, 그 소유 토지의 일부를 도로 부지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였으며, 그 보상금이나 사용료의 지급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C는 그 당시 기존 도로 인근의 울산 울주군 웅촌면 은현리 대 7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기존 도로 인근 토지의 다른 소유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ㄴ' 부분 토지 54㎡(이하 'ㄴ' 토지라고 한다)를 도로 부지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였고, 'ㄴ' 토지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40년 이상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

다. C는 그 이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B 마을 주민이던 D은 제3자를 거쳐 이를 매수한 다음 1981. 7. 23.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 3094호)에 따라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은 1999. 10. 16.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ㄴ' 토지를 그 진입로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기도 하였다.

라. D은 2007. 8. 17. 아들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고, 2007. 8. 2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을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E의 증언, 측량 감정 축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1) '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ㄴ' 토지에 상·하수도를 설치하는 등 이를 점유하고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ㄴ' 토지에 설치한 상·하수도 시설을 철거하고, '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1)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참조).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인근 주민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

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로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2844 판결).

2) C는 'ㄴ' 토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그에 따라 인근 주민은 'ㄴ'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였다.

D과 원고는 그 이후 'ㄴ' 토지를 매매나 증여로 특정승계하였으므로, 'ㄴ' 토지에 위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ㄴ' 토지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그 인도를 구할 수 없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강경호